

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2756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. 03. 07.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24. 03. 08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24. 03. 21. 산업경제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건축개발과장 정상호)

가. 개정이유

- 「건축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,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일부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인용 항 정정(안 제7조제2항)
- 상위법령(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) 개정에 따라 위임사항 반영(안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)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건축법」 제61조제1항,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86조제1항
-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
 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 - 특이사항 없음[복지지원과-41141(2023. 10. 27.)호]
- 기 타
 - 1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4-147호

가) 예고기간: 2024. 1. 22. ~ 2024. 2. 11.(20일간)

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4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
5) 비용추계서: 미첨부 사유서 붙임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 조정제)

○ 개정 목적

-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,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, 현행 조례 내용 중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.

○ 주요 검토 내용

- (안 제7조)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으로, 제2항의 내용 중 인용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.
- (안 제29조)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, 근거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(2023. 9. 12.)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.
- (부칙 안 제1조 ~ 제2조) 시행일 및 일반적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○ 종합검토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일부 자구 수정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, 조례 개정 목적과 필요성,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,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4. 3. 21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